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-23호

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-69(2015.10.20)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9일
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칭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구역위치 :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73-2번지 일대
- 나. 구역면적 : 1,456.2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명 :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자, (주)동구씨엠건설 대표 김탁용
- 나. 주소 :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10길 45,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81-12(동구빌딩 201호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년 5월 9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- 1) 대지면적 : 1,415.67㎡
- 2) 건축연면적 : 3,036.26㎡
- 3) 건축물 규모 : 지하1층/지상7층 아파트 1개동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 (단위:m ²)							비고
	계	43.35	46.57	47.92	54.01	54.17	57.55	
계	42	6	6	6	12	6	6	
토지등소유자	22	—	—	—	12	6	4	
일반분양	20	6	6	6	—	—	2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없음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

○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의2

6. 관련도서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도서는 중량구청 주택과(☎2094-2134)에 비치하여 조합원 등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.